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주택공간위원회 서준오 의원

○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서준오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서울시는 「도시재정비」 법에 따라

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

주거환경의 개선,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

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○ 노후 주거지의 정비를 통한

서울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지만,

여러 여건들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.

○ 이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

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 추진 시 공급하는

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50% 이상에서 50%로 하고,

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

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.

○ 본 조례 개정을 통해

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여,

주거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지역의 정비사업을 원활하게

추진할 수 있습니다.

○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